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50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박상혁·김우영·정을호
김승원·허영·김주영
이연희·한민수·김영환
이해식·조승래·김한규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 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 기업 불편이 크고, 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간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로 속도와 혁신이 중요한 신산업·신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

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기획·조정하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의 아이디어가 상용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배정 및 추진 총괄관리, 범정부 규제특례 기획·공모 안건 발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나.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제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기준·절차·유효기간을 정하고 규제특례 승인 시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다. 규제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법령정비를 마치도록 하는 등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 라.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의 세부기준·절차·취소·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의 신청, 기존 규제특례 조건의 변경, 규제특례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는 법령 정비에 관한 이해갈등·부처이견 등에 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조정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규제특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산업·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이란 신산업 분야에 활용되거나 신기술의 성과를 활용하는 서비스·제품을 말한다.
4.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5. “규제신속확인”이란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실증특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제한적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임시허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8. “규제특례”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말한다.

9. “규제특례 관계법률”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을 말한다.

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라. 「산업융합 촉진법」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10. “규제특례 주관기관”이란 규제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규제신속화 인이나 규제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1. “관계 행정기관”이란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2. “개별규제특례위원회”란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주관기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규제특례 등에 관한 조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규제특례 운영기준 등

제4조(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① 국무총리는 제1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접수·처리 및 소관 규제특례 주관기관 지정
2. 규제특례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신청·승인 건에 대한 관리·점검
3.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관련 법령 정비 및 서비스·제품 상용화 등에 대한 관리·점검
4. 제17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의 접수
5. 제17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조정 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토

6. 제6조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기획·공모하는 규제특례 안건의 발굴

7.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합센터의 장은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개별규제특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별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별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특례 등의 운영기준) ① 제4조제2항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자료보완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의결을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

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규제특례를 충분히 부여했거나, 국민안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개별규제특례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

⑥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규제특례 관련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획·공모할 수 있다.

⑦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접수한 규제신속확인 또는 규제특례 신청의 소관 관계 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 기관을 결정한다.

⑧ 그 밖에 규제특례 운영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규제특례의 유효기간)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고,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시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해당 사업의 실증이 개시된 날짜를 시점으로 기산한다.

제8조(규제특례에 부과하는 조건의 기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할 때는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해당 조건으로 인한 사업 활동의 제한 정도와 조건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심의한다.

③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제12조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조건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안정성 점검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과할 것
2. 사업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과할 것
3. 사업을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부과할 것
4.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
5. 현행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제품에 적용되는 사항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
6.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

제9조(규제특례에 부과된 조건의 변경) ① 규제특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 부여 시에 부과된 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규제특례를 받은 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정이 변경되어, 부과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 규제특례 관련 사업을 착수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안전성 또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검증을 위해 규제특례의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건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 달성과 무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조건에 따른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유사한 조건에서 시행된 시범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안전성 또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확인되어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조건을 변경하여 안전성 또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경우

마. 조건에 따른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의 반대 등의 사유로 규제특례 관련 사업의 착수 또는 지속이
사실상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에 부과된 조건을 변경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개
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규제특례 결과에 따른 법령의 정비)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가 부여된 날부터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법령을 정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관련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이 포함된 법령정비계획을 해당 규제특
례를 받은 자 및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특례를 받은 자는 규제특례와 관련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법령 정비 요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 정비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관련 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법령 정비의 요청과 정비 계획 등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 제11조(규제신속확인) ①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사실 및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회신 사항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밖에 규제신속확인의 세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증특례) ①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사실 및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실증특례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

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3.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⑦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기준을 실증특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실증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2조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조건 또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실증특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실증특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2조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신산업·신제품 서비스·제품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증특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임시허가) ①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사실 및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결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3.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⑦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에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를 마쳐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⑪ 그 밖에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5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개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조건 또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장 규제특례 등에 관한 조정

제17조(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조정) 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자 간 갈등,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등의 사유로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의·의결을 완료할 수 없어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어 해당 규제특례 신청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3.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건 부과 또는 제9조에 따른 조건의 변경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해당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제10조에 따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요청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여 규제특례를 받은 자 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안전 상정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센터의 장은 안전 상정 여부에 대해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결과의 처리) 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정을 신청한 자,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조정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법령을 정비하고 매 분기별로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법령 정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기간 중 유효기간의 지속)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중에 제17조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조정이 있

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손해배상)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받은 자는 사업 시행 전에 해당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규제특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규제특례를 받아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제공하는 자는 그 서비스·제품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규제특례 주관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규제특례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

를」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2조(공무원에 대한 포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무총리 및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 및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4조에 따라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제5조에 따른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 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자

제26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가 취소된 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건 중 유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한 규제특례 부여 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